## 2019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	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결글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97,730	16,820	0	0	
02월	197,730	16,820	0	0	
03월	197,730	16,820	0	0	
04월	196,980	16,760	0	0	
05월	196,980	16,760	0	0	
06월	196,980	16,760	0	0	
07월	196,980	16,760	0	0	
08월	196,980	16,760	0	0	
09월	196,980	16,760	0	0	
10월	196,980	16,760	0	0	
11월	196,980	16,760	0	0	
12월	196,980	16,760	0	0	
연말정산	37,020	2,790			
합계	2,403,030	204,090	0	0	
총합계				2,607,12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10,600	0
02월	210,600	0
03월	210,600	0
04월	210,600	0
05월	210,600	0
06월	210,600	0
07월	218,700	0
08월	218,700	0
09월	218,700	0
10월	218,700	0
11월	218,700	0
12월	218,7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i	0	
합계	2,575,800	0
	총합계	2,575,80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류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	험(주)	애니카다이렉트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보장성	202-81-45	5***	119W3530940000		760205-*****	오재경	502,900
	인별합계금액						502,90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동양생명보험 (주)		(무)Angel건강보험	(보장성) 1종(			
보장성	202-81-38	3***	1120685	73	780430-*****	조정만	300,000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 (영업소)		(무)Chubb New 3년 험(	(무)Chubb New 3대질병보장보 험(			
보장성	116-84-00	)***	CAN401008	CAN4010080017		조정만	79,020
	교보생명보험 ( 주 )		무배당교보어린이	CI종신보험(			
보장성	102-81-11***		21212301	212123011806		오예진	363,288
	교보생명보험 ( 주 )		무배당교보우리아이든든보험1종				
보장성	102-81-13	1***	212123011863		130415-*****	오예진	448,920
	780430-*****	조정만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	l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0	(수익자)	종피보험자3(	수익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 CI				
보장성	102-81-32	2***	L0100746!	5633	101017-*****	오유진	379,710
	780430-*****	조정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HI0810)				
보장성	102-81-32	2***	L2008U74	L2008U740437		조정만	2,078,480
	760205-*****	오재경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아이(I)러브(LOVE)?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1909			
보장성	201-81-45***		320192370	6447	101017-****	오유진	101,150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참좋은운전자+보험1908				
보장성	201-81-45***		320192373903		780430-****	조정만	14,00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신한생명보험	(주)	참좋은치아보험PlusⅡ(갱신형)				
보장성	104-81-28	3***	00110969628		780430-*****	조정만	492,000
	인별합계금액						4,256,568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6-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1-88***	부*****	일반	11,000
**7-11-55***	코***	일반	496,440
**7-19-71***	수****	일반	48,000
**7-16-07***	메***	일반	10,730
**5-18-00***	뉴****	일반	7,450
**3-92-00***	<u>*</u> *****	일반	143,300
**4-38-63***	부*****	일반	8,3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725,22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25,22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2-30***	센*****	일반	98,900
**5-14-52***	신****	일반	2,800
**7-96-15***	人 *****	일반	5,200
**9-30-00***	0 ***	일반	15,400
**2-90-00***	센*****	일반	19,100
**5-20-00***	마***	일반	12,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53,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53,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유진	10101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92-30***	센*****	일반	229,000
**7-36-54***	자****	일반	1,200,000
**5-14-52***	신****	일반	7,400
**7-90-69***	뉴****	일반	37,000
**7-92-28***	센****	일반	10,700
**1-90-10***	소*****	일반	10,500
**9-82-00***	<u>o </u> ***********	일반	207,900
**9-30-00***	0 ***	일반	20,000
**9-21-00***	O ****	일반	12,100
**2-90-00***	센*****	일반	9,100
**5-20-00***	마***	일반	6,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750,6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유진	10101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인별합계금액			1,750,6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10-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유진	101017-****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초등학교	***초등학교	**7-83-02***	일반교육비	278,950
초등학교	***초등학교	**7-83-02***	현장체험학습비	54,74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278,95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54,74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1-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2,450,570	0	554,500	84,600	13,089,67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1,000,300
신용카드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797,80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9,652,47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548,100
신용카드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84,600
신용카드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대중교통	6,400
인별합	계금액	13,0		13,089,67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7,940,191	0	265,810	118,719	8,324,7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4,056,930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98,940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82,209
신용카드	214-81-37***	비씨카드 ( 주 )	대중교통	166,87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3,883,261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36,510
인별합	불합계금액 8		8,324,72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시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로가 다른 경우 시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사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1,530,752	0	0	70,700	11,601,452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0,402,485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70,700
직불카드 등	375-88-00***	한국카카오은행(주)	일반	426,020
직불카드 등	101-86-61***	( 주 ) KB국민카드	일반	702,247
인별합계금액				11,601,452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935,313	0	13,400	103,500	9,052,213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	비씨카드 ( 주 )	일반	6,012,964
직불카드 등	214-81-37***	비씨카드 ( 주 )	도서공연등	103,500
직불카드 등	114-82-0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일반	727,000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2,195,349
직불카드 등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3,400
인별합계금액				9,052,213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가수하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들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규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00123-3000393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5-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174,720	0	0	51,000	5,225,72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284,800	194,000	202,200	203,9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50,750	1,339,100	493,740	229,700	5,174,720
		482,250	700,780	265,700	427,80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0	0	21,000	51,000
		0	0	0	30,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968,993	0	0	101,000	1,069,99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일반거래	172,590	77,223	32,280	87,400	
현금영수증		23,400	133,770	146,200	67,050	968,993
		59,880	156,800	12,400	0	
현금영수증 -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41,000	0	0	101,000
		0	0	60,00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유진	101017-*****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9,920	0	0	0	29,92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880	1,940	1,940	1,940	
	일반거래 6	6,640	1,940	1,940	1,940	29,920
		1,940	1,940	1,940	1,9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오재경	760205-*****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603-82-07337	(사)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부산지회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0,000	10,000	0
인별합계금액					1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12월)

####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조정만	780430-*****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4-84-05025	유엔난민기구 ( UNHCR )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40,000	240,000	0
인별합계금액					24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